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292 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,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우리군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건강·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 기숙사의 평창군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사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6조)

- 제4조(입사신청자격):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(서울, 경기, 인천)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
- 제6조(입사신청) : 필수 구비서류(성적증명서, 합격증명서, 건강진단서, 가산점 관련 기타증명서)
- 나. 입사 제한 사유(안 제5조)
 - 법정 전염병(결핵 등),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-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 등
- 다. 입사생 선발 시기 및 인원(안 제7조, 제8조)
 - 제7조(선발시기): 매년 2월까지 선발
 - 제8조(선발인원): 10명(남학생 4명, 여학생 6명)

라. 심사 방법(안 제9조)

- 제출한 성적 증명서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
-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 적용
 - * 성적의 20% :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,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
 - * 성적의 10% : 평창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
-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평창군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선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교육기본법」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에 196,200천원 반영, 이후 매년 5,000천원 편성
- 다. 합 의 : 기획실 예산부서 합의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(예고기간: 2020. 9. 15. ~ 2020. 10. 6.)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2020. 9. 14. 기획실-11301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20. 9. 14. 기획실-11301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2020. 9. 3. 복지과-52226)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마포공공기숙사(이하 "기숙사"라 한다)"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.
- 2. "입사생"이라 함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.
- **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**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입사생을 선 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 기간, 신청장소, 신청방법
 - 2. 신청 자격
 - 3. 선발기준, 선발인원, 선발방법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입사신청 자격)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(서울, 경기, 인천)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- 1.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
- 2.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
- **제5조(자격제한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.
 - 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- 2.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- 3.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
 - 4.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
- 제6조(입사신청)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성적증명서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,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)
 - 2. 합격증명서(신입생에 한함)
 - 3. 건강진단서(보건소, 건강관리협회, 병원 발행분 등)
 - 4. 그 밖의 증명서류(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등록 장애인의 경우)
- 제7조(선발시기)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선발인원)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
 - 선발하여야 하며,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.

- 1. 남학생 4명, 여학생 6명
- 2.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.
- 3.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,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.
- **제9조(선발 및 심의)** 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.
 - ② 입사생의 선발 시,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%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③ 입사생의 선발 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. 이 경우,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
 - 1.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,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: 성적의 20퍼센트
 - 2.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: 성적의 10퍼센트
 - 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.
- 제10조(입사권)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따르고,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(1년)로 한다.

- 제11조(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)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.
 - 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마포공공기숙사 입사신청서

등록기준지				전화번호	
주 소				우편번호	
학 교 명					
	성 명	한 글		한 자	
	주민등록번호				
		출	신 학	- 교	
지 원 자	졸업년도	학 교	별	소 재	지
	년		초등학교	시(군)	읍, 면
	년		중 학 교	시(군)	읍, 면
	년		고등학교	시(군)	읍, 면
	차량	소유 여	上		
	성 명	한 글		한 자	
친권자	주민등록번호				
	직 업	근 무 처		직 위	

 [%]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 기준에 따라,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조건 위반 시 퇴거 조치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, 마포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지원자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친권자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평창군수 귀하

⁻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, 이륜자동차(125cc 이하) 제외

관계법령 발췌

교육기본법

[시행 2019. 6. 19] [법률 제15950호, 2018. 12. 18, 일부개정]

교육부(학교혁신정책과) 044-203-6450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1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우리군이 수도권 진학 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에 대하여 보증금, 운영비, 가전설치비 지원

나. 관련조문

「교육기본법」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1년 이후 기숙사 5실 10명 지속배정

나. 추계 결과

항 목	산출기초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	합 계	196,200	5,000	5,000	5,000	5,000	216,200
보 증 금	33,240천원 × 5실	166,200					166,200
운 영 비	1,000천원 × 5실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가전비등	5,000천원 × 5실	25,000					25,000

※ 보증금 166,200천원은 기숙사 참여철회 시 회수

다. 재원조달 방안 : 평창군 자체재원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장 김남섭
연락처	(033) 330 - 202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	입						
세	출	196,200	5,000	5,000	5,000	5,000	216,200
보 증 금		166,200					166,200
운 영 비	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가전비등		25,000					25,000
재원 조달		196,200	5,000	5,000	5,000	5,000	216,200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196,200	5,000	5,000	5,000	5,000	216,200
자체	지방세	196,200	5,000	5,000	5,000	5,000	216,200
수입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